

##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152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3. 14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가. 당초 중구청사 건물 노후와 및 행정사무공간 및 편의공간 부족으로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(2017. 10. 16.)을 받았으나,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 취소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중구의회회의 결을 얻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심의회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): 2019. 2. 25.

나. 계획의 총괄

○ 처분대상 재산

- 토 지

- 수 량: 1필지
- 면 적: 31,614m<sup>2</sup>
- 기준가격: 27,772,741천원

다. 처분대상 재산현황

○ 토 지

(단위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	매매대금	할부이자	납부금액	취득사유
	소재지	지목	지적	처분면적				
1	교동 139	대	31,614	31,614	27,772,741	2,408,054	30,180,795	신청사건립

**【신청사 부지(중구 ↔ LH) 계약현황】**

- 계 약 일: 2018. 6. 29.
- 계약금액: 27,772,740,930원
- 납부방법: 5년간 10회 분할납부
- 납부기간: 2018. 6.~2023. 6.

총 액	계약금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302억	28억	27억	58억	57억	54억	52억	26억

※ 계약금 및 2018년 분할납부금 55억 납부 완료

※ 부지 조성원가 : 878,495원/m<sup>2</sup>(2,904천원/ 평)

다. 처분사유

-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고, 세입전망을 볼 때 지방세 증가 대비 국·시비 매칭 부담금과 복지비 부담금이 높아 향후 재정여건이 크게 좋아질 기미가 없어 신축이 요원하며,
-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, 울산시에 매각하여 시에서 공공용으로 조기 개발하는 것이 혁신도시의 조기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라. 계약 이후 그 간 추진상황

- 신청사 부지 활용방안 검토: 2018. 8.
  - 중부 도서관 건립(지구단위계획(용도)변경)
  - 복합개발사업(연면적 50%이상 행복주택 필수)
- 신청사 부지, 시 매입 건의(구청장·군수 조찬 간담회): 2018. 10. 19.
- 2019년 당초예산 확보(2019년 지연손해금 116,149천원): 2018. 12. 18.
- 시 회계과, 부구청장님 면담(학교부지 관련 중구 입장확인 등): 2019. 1. 15.
- 당면 현안 사업 보고(중구의회): 2019. 1. 22.
- 신청사 부지, 시 매수 요청 공문발송: 2019. 1. 22.

마. 향후 추진계획

- LH, 매매계약 승계에 대한 동의 요청: 시 예산편성 후
- 매매계약 승계 계약체결(시↔중구청): 시 예산편성 후

### 3. 근거 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
- 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

### 4. 참고 사항

- 가.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부
- 나.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
- 다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



##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처분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

### ◎ 토지

(단위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기준가액	처분시기	처분사유	비고
		소재지	지목	지적	처분 면적				
1	매각	교동 139	대	31,614	31,614	27,772,742	2019년	재정여건 부담 및 혁신도시의 조기발전	

## 위치도 및 현장사진

### 위치도



### 현장 사진

